

[별표 1] <신설 2017. 2.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 류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가. 한식목공	대목수	대목장
	소목수	소목장
나. 화공		단청장, 불화장
다. 번와와공		번와장
라. 제작와공		제와장
마. 철물공		두석장
바. 조각공	목조각공	목조각장
사. 칠공		칠장
아. 표구공		배첩장
자. 그 밖의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2.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 류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가. 한식목공	대목수	대목장(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대목장(경기도 무형문화재)
		대목장(강원도 무형문화재)
		대목장(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서천대목장(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대목장(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대목장(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나. 철물공		두석장(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다. 그 밖의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